

『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임대주택법」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임대주택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

폐지조례안은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「임대주택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